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방안 모색

2016년 7월 13일(수)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 저출산극복연구포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문의 윤소하 의원실 784-3080



## 인사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입니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도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하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작년 7월 25일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이후, 현재(2016. 3월 기준) 노인인구 684만명 중 455만명(66.6%)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OECD가 작년 5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약 310만 명)로 OECD 평균(12.6%)보다 약 4배(3.94배)가 높습니다. 복지부가 매 해 발표하는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42% 수준에서 2013년 약 5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인력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초연금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초연금이 갖고 있는 모순, 기초연금에서 애초 배제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문제인 ‘줬다 뺀 기초연금’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빈곤 문제 해소에 보다 더 기여를 할 수 있으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가장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둘째, 66%에 불과한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위원장님과 토론회 사회를 맡아 주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상준 어르신,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님,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조사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재만 과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시도 직접 토론에도 나서주신 정의당 윤소하 의원님의 열정에도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기초연금제도의 가장 큰 모순을 해결하고 노후빈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더 키워가는 계기를 만드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소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평균인 12.6%의 세배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더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19.4%인 것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노인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09년에는 45.1%, 2013년에는 45.6%, 2015년 49.6%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회원국은 고령층 빈곤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가난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公的) 이전 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8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소득대체율이 겨우 7~10%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 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전체 소득의 6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입니다. 10분 중 6분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께 불편한 몸 이끌고 나가서 일거리를 찾으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러니 60대 이

상 노인의 자살 충동 원인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인 슬픈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복지국가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합니다.

오는 7월25일은 기초연금 시행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441만 명의 노인이 기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기초연금, 하지만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줬다 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라는 훌륭한 제도에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뺀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양승조위원장과 본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본래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활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입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방안 모색

2016년 7월 13일(수)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인 사**
-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극복연구포럼 공동대표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사 회**
- **김성천**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발 제**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토 론**
- ① **이상준** 기초수급노인 당사자
  - ②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③ **윤소하** 국회의원
  - ④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⑤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 주 최**
- 국회의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 저출산극복연구포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문의 윤소하 의원실 784-3080



# 발 제 문

쫓다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sup>1)</sup>

7월 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2014년 기준 전체 노인 652만명 중 435만명, 66.8%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 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괜찮은 것일까? 이전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금액이 올랐으니 수급자들의 긍정적 답변은 당연할 결과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여러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 2014년 기초연금 제정이 당시 임박한 지방선거를 의식해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결과이다.

이 발표문은 기초연금이 지닌 문제점을 개괄하고, 특히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중점으로 다룬다.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2월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당들이 모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최근에는 진보적 언론뿐만 아니라 ‘TV 조선’까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사를 방영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제는 해결하자.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 1. 기초연금의 위상 : 보편적 노인 수당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우선 금액이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에 도입된 후 20년 후인 2028년에는 20만 원(현재 가치 금액,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으로 오르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만 원 도달 시점을 2014년으로 14년 앞당긴 것이다.

1) 이 발표문은 필자의 여러 글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제도적 위상이 (준)보편적 노인 수당으로 분명해졌다. 기존에는 기초노령 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보편 수당이나 가난한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공공 부조냐를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노인 수당으로 정리되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제1조(목적)에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며 보편주의 원리를 밝힌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과 명확하게 대비된다. 법적 위상에서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보편적 노인 수당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물론 현재 기초연금이 완전히 보편 수당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상위 30%를 제외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70% 노인이라면 준보편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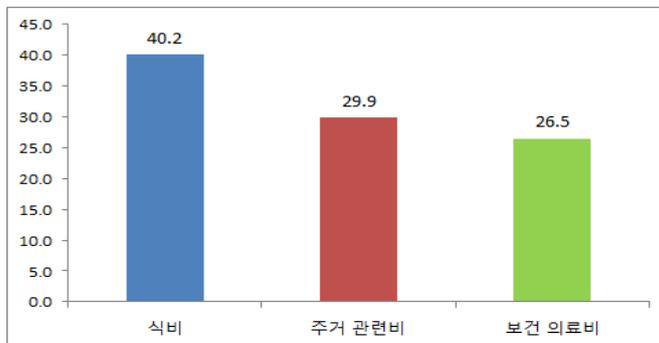
<표 1> 기초노령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의 목적 비교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b>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함</b> 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b>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하여</b>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기초연금의 네 가지 불편한 진실

기초연금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다. 대다수 노인들이 기초연금으로 현금 소득을 더 얻게 돼 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은 식비(40.2%)와 주거비(29.9%)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기본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초연금이 없을 경우 상당수 노인들이 기본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림 1> 기초연금의 주요 사용처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 된다”(2015년 7월 7일)

현재 기초연금의 미래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향후 노인 수가 늘어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무척 크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 수가 많아지는 만큼 당해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겨야 한다. 오히려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여러 독소 조항이 방치된 것이 문제이다. 이 조항들은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서둘러 통과된 탓에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지닌 ‘불편한 진실’은 다음 네 가지이다.

### 1)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다수 노인에게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기에 노인 빈곤 해소에 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년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빈곤율이 2013년 4분기 47.9%에서 2014년 4분기에는 43.8%로 4.1% 포인트 개선되었다.<sup>2)</sup>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혜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 36.5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다음 달 20일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는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하위 70% 노인들의 현금 소득은 기초연금만큼 일제히 증가하는데, 유독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여기서 배제된다.

### 2) 기초연금액의 물가 연동 조정

현행 기초연금은 사실상 물가와 연동해 금액이 조정된다. 현행 기초연금법을 보면, 매년 물가에 따라 기초연금을 연동하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물가, 노인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생활수준과 소득이 5년 만에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지출 추세를 감안할 때 매년 물가만큼 오르던 기초연금액이 5년째라고 크게 오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물가만큼 오르다 5년마다 미세 조정을 거쳐 다시 물가를 반영하는 ‘사실상 물가 연동’으로 귀착될 개연성이 무척 크다.

정부의 장기 재정 추계를 보면 물가 인상률은 소득 증가율의 약 절반에 그친다. 그만큼 기초연금이 해당 시기 소득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당장 2015년부

2) 이은영(2015), <기초연금제도 시행 전후 노인 가구의 가계 수지 및 노인 빈곤 추이 분석>, 《연금이슈&동향분석》 제23호(2015년 7월 17일).

터 드러났다. 4월부터 기초연금은 전년도인 2014년 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20만 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올랐다. 기존 소득 연동 방식이었다면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율인 3.2%가 증액돼 6,400원 올랐어야 하지만 2,600원 인상에 그쳤다. 약 400만 명의 노인들이 매달 4,000원씩 덜 받게 된 것이다. 2015년 물가 상승률은 0.7%로 더 낮아졌다. 그 결과 2016년 기초연금도 그만큼만 올라 20만 4,010원에 그쳤다. 물가 연동은 예금에서 복리 효과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를 크게 만든다.

특히 물가 연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한 공약 위반이다.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집에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10%”로 명시돼 있다. 분명하게 소득 연동 기초연금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행복위원회에서조차 물가 연동 방안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입법 예고안에 갑자기 기초연금이 등장했고,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었다. 기초연금의 물가 연동은 미래 연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민연금 연계 감액’보다 기초연금에 더 타격을 주는 독소 조항이다.

###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감액된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감액 폭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지난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 불어온 복지 바람에 따라 기초연금을 두 배로 올리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온전한 기초연금이어야 했건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을 발표하자 큰 논란이 벌어졌다.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을 접한 국민들 가운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통령 선거 기초연금 공약에 이미 ‘연계 감액’을 명시했다고 설명한다. <그림 2>에 있는 ‘통합 운영’이라는 단어가 그것이다. 과연 어느 누가 이 단어를 ‘연계 감액’으로 이해했을까? 사실상 선거 전에 공약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당선되었으므로 ‘공약 사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sup>3)</sup>

3) 실제로 2013년 9월, 필자를 포함한 복지 단체 대표 4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기각됐다. “공약은 장래에 대한 의사 표시 혹은 계획으로 과거와 현재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주요 기각 이유다.

<그림 2>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

**새누리당의 약속**

- 기초연금 도입
  - 기본방향 :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성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대상 및 내용 :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족보가 다른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준)보편 수당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당장의 기초연금 재정 조달책임을 줄여보고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 4)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압박

기초연금 운영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무겁다. 대다수의 다른 복지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조달하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다. 박근혜 후보는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걸며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초연금액을 2배 올리면서 국고 보조율은 기존 75% 수준을 유지했다. 기초연금 인상 비율만큼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율과 국고 보조율이 지금 방식으로 유지되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연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3년 614만 명이던 노인 인구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말년인 2017년 712만 명으로, 4년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 전망이다. 그만큼 기초연금 소요 재정도 커지고, 지자체 대응 예산의 부담도 함께 무거워진다.

기초연금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국가사업이기에 이로 인한 지자체 재정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이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재정 조달 공약 3대 원칙 중 하나가 “지방 재정 부담 충분히 감당한 재원 조달”이고,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추가 재원 소요 규모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하겠음. 만약 지자체의 재원 조달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이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거나 해당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올리겠다는 의미이다.

<그림 3>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재정 공약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보도자료

**“재원없이 공약없다”**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영계획 발표**

**나라살림 가계부(공약 수입지출표) 공개**

---

**재원조달 3대 원칙과 4대 재정개혁 방안 제시**

**<재원조달 3대 원칙>**

1. 나라 빛 내지 않는 재원조달
2.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당한 재원조달
3. IMF, OECD 권고에 따른 '세출절감:세입확대=6:4' 맞춘 재원조달

○ 둘째,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하겠음.

- 지자체의 재원조달 규모가 지자체의 추가재원소요 규모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하겠음. 만약 지자체의 재원조달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서 추가 지원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준보편 복지이고, 소득과 자산 관련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는 제도이다. 지자체가 지급 업무를 맡되 소요 재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 3.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돼야 하는 이유

보건복지부와 학계 일부에서는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보충급여 적용 여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위 70%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기초연금 인상만큼 더 생기는데, 유독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여기서 배제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대부분 노인의 현금 소득이 증가하는데 기초생활 노인만 그 자리에 머문 탓에 노인 내부 격차는 심화된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내세웠던 노인 빈곤율 완화와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돼야 하는 이유들을 확인하자.

1) 기초연금법의 제정 취지: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한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이러한 취지는 기초연금법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은 제5조에서 기초연금 감액방식을 다루면서 6항에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여기서 감액 원리에도 불구하고 2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대상을 명시했는데, 장애인연금 수령자, 기초생활 노인 등이 열거되어 있다.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필자주: 20만원)**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필자주: 기초생활 수급 노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 2013년 12월 27일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3. 12. 27)

기초연금법 제 5조 6항의 취지는 기초생활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다름아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 노인에게 2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 시행 준비과정에서 관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 기초생

활보장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지급하는 것이기에,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행령의 ‘소득의 범위’ 중 기초노령연금(지금은 기초연금)을 삭제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했다. 기초연금법의 취지가 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가...나....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모두 관할하는 정부조직이다. 만약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삭감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기초생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초연금법에 명시할 이유가 없었다.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하고 다시 20만원 깎는 것이라면 이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초연금법의 제정 취지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

2) 기초생활보장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적이전소득이 다수 존재한다.

정부는 보충성원리가 절대 철칙인양 주장하지만 이미 다수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이에게 제공되는 양육수당,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자활소득의 일부(30%)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실태, 기초연금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표 2> 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소득산정 제외 금품 (2013년 기준)

제외사유	지원 제도	월 지원액	근거규정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고려	<b>&lt;장애인 추가비용 관련&gt;</b>		기초법 시행규칙 제2조 (일부 시행령 제3조, 지침에서 규정)
	장애인연금	15.5~21.1만원	
	장애수당	3만원	
	장애아동수당	10만원~20만원	
	<b>&lt;보육·교육 등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등&gt;</b>		
	한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5만원	
	아동보육료	22~39만원	
	유치원교육비	국공립 6만원 사립 22만원	
	양육수당	10~20만원	
	<b>&lt;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gt;</b>		
	회귀난치성 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10.2~12만원	
	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해당 금액	
	<b>&lt;기 타&gt;</b>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5~26만원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15만원		
근로유인적 성격의 급여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소득	해당 소득의 50%	
	자활사업 참여 소득	해당 소득의 30%	
	장애인, 노인, 초·중·고·대학생 근로·사업소득	해당 소득의 30%	
	행정인턴 소득	해당 소득의 10%	
타법률 규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95.3만원	위안부지원법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5만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14.2) 19쪽.

3)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 도입된 (준)보편적 사회수당이다.

기존에 기초연금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충성 원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기초연금이 보충성원리로 포괄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된 추가 복지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계하여 볼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기초연금제도가 나중에 도입되었고,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수준을 만족한 이후에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sup>4)</sup>

#### 4) 보충성원리의 근거인 최저생계비(생계급여) 기준이 너무 낮다.

백번 양보해 보충성원리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에서 보충성 원리의 정당성은 취약하다. 현재 보충성 원리의 기준인 최저생계비(2016년 중위소득 29%, 향후 30% 예정)가 과연 현실성 있는 절대 빈곤 기준선일까?. 보통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즉 정부의 공공부조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준선이 이 수준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30%다. 이렇게 낮은 생계급여 기준을 토대로 운영되는 보충성원리는 애초 정당성이 취약하다.

정녕 정부 논리대로 생계급여의 보충성 원리가 중요하다면 노인 생계급여의 기준을 기초연금만큼 상향하는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낮은 생계급여를 상향하는 긍정적인 일이기도 하다. 아직 이러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이것이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빈곤 노인의 실질적 생활 개선에도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 5) ‘줬다뺏는 기초연금’: 노인 소득 격차가 더 커진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쟁에 종종 등장한다.

이는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표 3>에서 보듯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서 현금 소득 역전 현상은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문제이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서 소득이 나온다고 가정하는 소득인정액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정녕 보건복지부가 ‘소득역전 현상’을 해결하고 싶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 부양의무자제 등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를 마치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오도한다.

4) 탁현우(2016), [기초연금 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39쪽.

<표 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 (단위 : 천원/월)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경상소득
기초수급자		367	508	875
차상위계층	비수급빈곤층	388	130	518
	최저생계비 100%~120%	719	120	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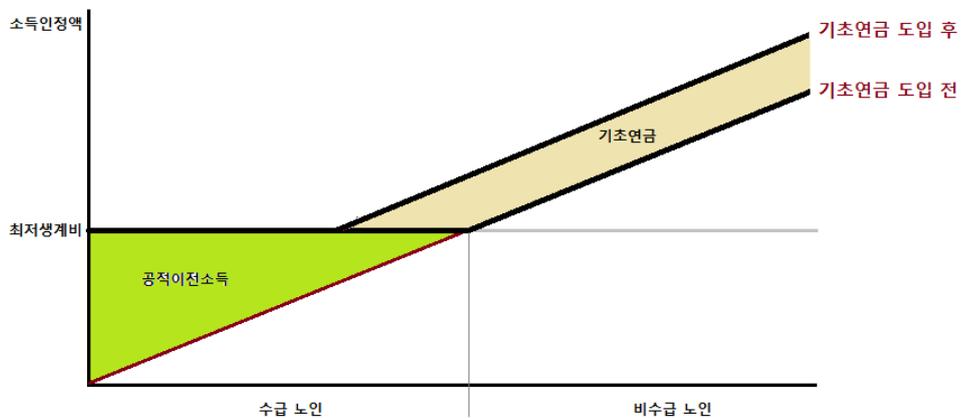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2014), “보도설명자료: 뉴스1, 프레시안 “어르신 90% 기초연금 받는다?...복지부 거짓말!” 기사 관련“ (2014.7.16.)

- 주1: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출처 : '10. 빈곤실태조사, 보사연)

- 주2: 비수급빈곤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수급자가 아닌 계층

기초연금 도입으로 실제 발생한 형평성 문제의 실체는 다음 그림과 같다.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공적이전소득으로 받았다. 그런데 기초연금 도입으로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늘어나는데 수급 노인만 이전과 동일하게 공적이전소득이 동일하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공제된 결과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 도입으로 오히려 노인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역진적 일이 발생한다.

<그림 4>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소득 변화



빈곤 노인들의 요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 항목을 제외하라는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라는 제안이다. 이렇게 해야 하위 70% 노인의 현금 소득이 일제히 함께 증가한다. 기초생활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금 지위에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6) 필요 재정 9천억원: 고령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할 재정이다.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은 어느 정도일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요액을 합쳐 2017년 8893억원이다(시설에 있는 기초 생활수급 노인 제외한 36.5만명 기준).

물론 작은 재정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필요 재정이 10조 원에 달하는 대형 복지이다.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복지이다. 9천억 원은 절대액에서 작지 않지만, 비중으로 보면 전체 기초연금 예산의 1할보다 작다. 기초연금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 복지이다.

<표 4> 개정안 제2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국 비	7,181	7,393	7,911	8,138	11,273	41,896	8,379
지방비	1,712	1,762	1,886	1,940	2,687	9,987	1,997
합 계	8,893	9,155	9,797	10,078	13,960	51,883	10,377

- 국회예산정책처(2016), [비용추계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의원 요구)] (2016.6.22.)

- 주: 국비는 국고보조율 80.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3. 해법

해법은 명확하다. 행정적으로는 보충성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방안이 이미 존재한다. 보건 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지급하는 것이기에,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기초연금’ 단어를 삭제하면 된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애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해법이다.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실제 19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었었다. <표 5>에서 보듯이, 형식은 기초생활보장법 혹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지만 내용은 모두 ‘소득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것이다.

<표 5> '줬다 뺐는 기초연금' 개정법안 현황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일자	관련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동익의원	'13.8.5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일부(보건복지부령)만 포함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이목희의원	'14.1.14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박원석의원	'14.8.27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기초연금법	양승조의원	'14.11.27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초연금법에 명시

이 법안들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겪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를 맞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또 추가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고, 사회적 여론과 언론의 관심도 커 조만간 긍정적 성과가 나길 기대해 본다.

<표 6> '줬다 뺐는 기초연금' 개정법안 현황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일자	관련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춘숙의원	'16.6.27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윤소하의원	'16.6.29	
기초연금법			

주목할 점은,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가 모두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소득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6월 펴낸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에서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인정하는 현행 방식’,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제외하는 방식’,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일부 제외하는 방

식' 등을 제시한다. 여러 대안을 제시한 셈이지만 사실상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sup>5)</sup>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때이다. 이전에 최경환 부총리, 이완구 국무총리도 '검토하겠다' 답변했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처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이 모두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사안이 바로 '줬다뺐는 기초연금'이다. 20대 국회에서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응답할 때이다.

---

5)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줬다뺐는 기초연금' 해결을 옹호하는 철학적 논리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의 두 번째 원칙인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leastadvantaged)의 후생수준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 제도가 다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이라고도 하며, 최소 수혜 계층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이다." (39쪽)

# 토론문



<토론 1>

이 상 준

##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도발이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 1.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을 위한 보편적 제도이다.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70%에게 “우선” 주고 있다. 공적 연금제도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범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노인중 7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받아야 한다.

### 2.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6항은 다음 대상에게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주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유족급여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모두 받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

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3. “줬다 뺀 기초연금”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소득의 범위에 “기초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포함시킨 것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맞지 않다. 기초연금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후에 제정되었는데, 기초연금법의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부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흔히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중에는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긴 이후에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고, 새로운 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전액 주어야 한다고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 4. “줬다 뺀 기초연금”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다.

법 체계로 볼 때,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을 국가의 통치체계를 왜곡시키는 일이다. 기초연금법 제5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기준연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빼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줬다 뺀 기초연금”의 문제점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초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소득산정에서 제외시켜 해결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에서 준 급여를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한 것은 법체계와 법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삭감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정부당국자는 지난 2년간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급여를 받

지 못한 노인에게 사과하고, 늦어도 2017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야 한다.

5.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도입시에 장차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주기로 한 정신을 살려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는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이는 국민의 생활수준의 변화를 급여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국민의 삶의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데,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분담할 지, 국민연금의 급여와 어떻게 연동시킬 지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게 논의하면 좋겠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생계급여를 그만큼 삭감하는 “줬다 뺀 기초연금”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법에 의해 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3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행정부가 도발하는 행위이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에서 이를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늦어도 2017년부터 가장 가난한 노인들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초연금 토론문

국회의원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 1. 현황

□ 노인인구는 2015년 662만 명에서 2030년 약 1269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하고, 2050년에는 약 1800만 명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9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16만 명에서 2060년 2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6)</sup>

○ 인간의 길어진 수명은 개개인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소득보장, 건강수명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의 질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령화가 재앙적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출범하고,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였다.

○ 지난 10년간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소득보장체계 확립, 장기요양보험 도입, 치매관리법 제정 등 노인돌봄·요양 지원 강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등 관련 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하지만 여전히 노인빈곤율, 자살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1.3명을

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 정부, 2015)

넘지 못하고 담보 상태다. OECD 국가 중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한 반면 우리나라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노인자살율은(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55.5명)이 전체 자살률(27.3명)보다 2배 이상, OECD 평균의 3배(2014년 기준)이다.

(OECD 평균18.8명, 프랑스 27.1명, 일본 27.1명, 미국 14.3명, 핀란드 16.2명, 영국 5.9명)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2015년5월)

(※ 일본 19.4%, 독일 9.4%, 스웨덴 9.3%, 프랑스 3.8%, OECD 평균 12.6%/2014년 기준)

○ 노인은 2명 중 한 명이 빈곤하여 전체 빈곤율 14.6%를 훨씬 웃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1.59%, 평균 전체 빈곤율이 11.15%로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인은 다른 연령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과 더불어 노인 집단 내부에서도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노인과 여성 노인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를 적게 소유하고 있다.<sup>7)</sup>

□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외국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이는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 기인한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성숙되더라도 노후 빈곤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워낙 광범위하고, 개선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 명 중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458만 명,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2만 명

7) 국민연금공단(이상봉 등,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 완화 효과 분석, 2015)

에 이른다.(2015년7월 기준) 전업주부 등 아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적용제외자도 1049만 명이다.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 상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9%에 이르지만, 임시·일용직은 17.3%에 불과하다.(통계청, 2014년12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노후 빈곤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표> 노인 상대빈곤율 (2012년 기준, 단위 %)

국가	한국*	미국*	영국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49.6	21.5	13.4	11.59
전체 빈곤율	14.6	17.6	10.5	11.15

\*2013년 기준

※ 출처: 국민연금공단(이상봉 등,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 완화 효과 분석, 2015)

## 2. 기초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 노인빈곤율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낸 것은 기초연금 도입이다.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41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빈곤율은 4%p가 하락하였다 한다.<sup>8)</sup>

○ 하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 시피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같은 액수가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아무런 의

8)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15)

미가 없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지급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초연금법에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지급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에서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일종의 입법권 침해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면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조항에서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어야 한다. 오히려 기초연금법 제5조에서는 기준연금액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명시하여 지급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기초연금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타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

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각호 생략)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총 수급액이 변하지 않아 기초연금 지급이 소득 보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소득보장 효과가 전무하므로 빈곤율 개선 효과도 미흡하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 빈곤율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유독 최빈곤층 노인에 대하여 ‘지급 무효’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기초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수급 탈락의 위험이 높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할 것을 염려하여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93%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중 신청포기자는 나머지 7%, 약 3만 명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자발적 미신청자(신청 포기자)는 21만 명이다. 소득이 드러나 복지서비

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이들이 더 있는지, 이들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봐야 한다.

■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보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등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에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6만 명(예산정책처 추계 기준)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7,180억 원(국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은 아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기초연금 토론문

원 시 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빈곤율이 10년째 1위라는 점은 익히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보려는 위기의식이 정치권과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제20대국회 개원 직후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칙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는 현행의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던 사항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기관이고 대민서비스 기관이 아님에도 전화민원을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주요 민원사항이 바로 기초연금과 관련되어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단순히 2배 올린 것이 아니라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로의 전환임에 분명하다. 재정상의 한계를 이유로 결국 현재와 같이 후퇴하였으나, 적어도 대선공약에서의 본래 취지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노인수당이었다. 또한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논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하향조정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되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의 상당부분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때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개편도 전제는 되어야 한다.

제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바라본다면, 발제자의 추가적인 국고지원 제안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중앙-광역-기초 간 매칭 방식의 공동사업운영이 아니라, 스웨덴 모델처럼 업무영역이나 분야별로 수행주체를 나누어 중앙-광역-기초가 각자 독자적으로 맡은 분야를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하면서, 예컨대 기초연금사업과 같은 경우

는 중앙정부가 말도록 하고, 노인들봄서비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등의 방식운영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다녀보면, 지자체는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중앙에서 매칭사업으로 기획하여 확일적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매칭사업 수행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의 소득역전현상을 근거로 반대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이미 상당한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 간 소득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고, 왕래가 끊어진 “부양의무자”규정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된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 기초지자체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빈곤한 노인과 그보다 더 빈곤한데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는데, 이미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에게 다른 복지수당들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더 촘촘히 설계되어 사각지대를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선행과제가 해결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역전의 문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는 정부의 보충성 원칙과 관련한 예외조항들을 제시하였는데([표 2] 참고), 이번에 찾아보니 여기에서 빠진 내용 중 고엽자후유증수당 등도 발견되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다 해도, 사실상 소득인정액 제외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다른 수당이나 지원금이 제외된 사례가 있으므로, 기초연금도 제외하자는 논리보다는,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보충성 원칙의 세부적인 예외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된다면 기초연금을 굳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킬 이유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홍보되었던 내용과 실제 운영실태 간의 격차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기초연금법」을 제·개정된 국회에서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다 더 좋은 법률이 마련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발견될 때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의 정책운영의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고, 그에 근거를 두어 정책이 운용되는 것일 진대, 제도의 근본취지와 현실 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비교검토해서 조언 드리는 것이 입법조사관의 역할인 만큼 오늘 제안된 의견들은 제20대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성실히 전달되도록 향후 노력하고자 한다.

<토론 5>

박 재 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참고자료 1]

‘줬다뺏는 기초연금’ 관련  
2016년 총선 공약



<표> 20대 총선공약 비교: '줬다 뺐는 기초연금 해결'

구분	'줬다 뺐는 기초연금' 해결			현행 유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진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실질적 혜택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	노인가구에 별도 추가 비용 없으므로 현행 체계가 보충성 원리에 부합
약속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	감액(삭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	없음

- 출처: 각 정당 공약집을 근거로 작성

<더불어민주당 공약>

**9** 최빈곤층 어르신 40만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
  -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삭감되어 실질적 혜택이 없는 실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 제공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조사하는 소득·재산 항목에서 기초연금 수령액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삭감되는 문제 방지
-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연금액 수준 설정 및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

## <국민의당 공약>

# 기초연금 안 깎고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 //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201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8만여 명**과 국민연금 수급자 28만여 명 감액 폐지(소요 재정 8500억)
- 어르신 1인당 노인복지예산을 한시적으로 향후 5년 동안 3% 증가율 유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노인가구의 주거비, 광열비 등 지출비중이 높은 항목 지원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준 고령자,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포함된 노인빈곤 제로를 위한 로드맵 마련
- 어르신빈곤제로를 목표로, 공적·사적 연금별 실질소득대체율의 기간별 목표, 정부 지원 방안, 고용정책 등이 포함된 "생애주기별 노후소득준비 프로그램" 마련

### // 기대효과

- 어르신빈곤 제로 시대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하여 로드맵 수립으로 실천력 담보
- 어르신빈곤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혜택 제공

## <정의당 공약>

### 약 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참고자료 2]

“소개합니다”

##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2016. 7.

###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20개 단체)

## 발족문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대한민국 복지열망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중 406만명이 20만원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득 7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을 완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데 이 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이것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변명하지만, 한국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한 곳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고, 가공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소득인정액(추정소득, 부양간주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게 적절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핑계일뿐이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소되는 문제이다.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복지를 얻는데,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을 배제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조속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성한다.

2014년 6월 26일

## <요 구 서>

#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봐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 깎여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해결하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3%(2012년)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노인을 위한 준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되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똑같이 발생한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전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달 8월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단위: 명)

	65세 이상 노인수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일반	시설	계
2010년	551만명	373만명	1,458,198	379,548	30,744	410,292
2011년	570만명	382만명	1,379,865	363,654	31,734	395,388
2012년	598만명	393만명	1,300,499	356,880	32,365	389,245
2013년	614만명	405만명	1,287,541	361,348	32,667	394,015

- 출처: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자료], "국회자료제출(남윤인순 의원)" 재구성. (2013년은 8월 기준)

2013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 4천명, 수급자의 30.6%에 달한다. 2014년에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했기에(2013년 614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더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약 40만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당한다. 가장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설명자료에서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원 혜택을 얻는 것처럼 홍보한다.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며 마치 혜택을 주는 듯이 홍보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다.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3. 12. 27)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70% 노인의 현금소득이 일제히 최고 10만씩 오르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여기서 배제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

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평계를 낸다. 전형적으로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답변이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가...나....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설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 대상이 아님.

기초연금 공약 사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물가 연동 등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에 행한 과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일까지 추가하려는가?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렇게 하라.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정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이목희 의원안, 박원석 의원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20만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여야 모두 나서야 한다.

2014. 11. 17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 활동 일지

**<표 1> 2014년 기초연금연대 활동 일지**

날짜	활동	장소	내용
5.16	요구서발표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 봐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5.19	기자회견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빈곤 노인 우롱한다 기초생활 40만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라“
5.27	1인시위	광화문	릴레이 1인시위 시작 (매일 진행)
5.27	선포식	광화문	기초연금 40만 노인 기초연금 보장 운동 선포식
5.29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신청서 제출
6.10	노인대회	종묘공원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하라”
6.26	발족식	세종대왕상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식
6.26	촛불집회	청계천 입구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촛불”
7.1	도끼 상소	청와대 앞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대통령 도끼상소
7.4	릴레이편지		대통령에게 보내는 빈곤 노인의 편지 1차 모음 발송
7.9	기자회견	광화문	사회복지사 388명 성명 발표
7.9	신문 광고	경향신문	사회복지사 1차 신문광고
7.9	샤우팅대회	국회의원회관	빈곤 노인 국회 샤우팅 대회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
7.16	공개토론 제안		보건복지부에 공개토론 제안
7.16	반박자료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규모에 대한 반박자료 발표
7.18	재반박자료		보건복지부 전액 수급자 규모 해명에 대한 재반박자료 발표
7.18	공개질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공개 질의
7.23	릴레이편지		대통령에게 보내는 빈곤 노인의 편지 2차 모음 발송
7.24	입장 발표		기초연금 지급 맞는 입장 발표 (누더기 황당 연금 비판)
7.25	신문 광고	한겨레신문	사회복지사 2차 신문광고
7.29	성명 발표		새누리당 무응답 규탄 성명
8.1	기자회견	청와대 앞	국민서명운동 선포식 및 ‘줬다 뺏는 기초연금 D-20’ 알림
8.19	서명 활동	지역 곳곳	8/1~19, 복지관, 서울중심거리 등에서 서명활동 진행 중
8.22	기자회견	청와대 앞	생계급여 삭감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8.28	논 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위한 국회 노력 환영
8.28	촛불	청계천 입구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촛불”

9.3	플래카드	독립문	효도정당 새누리당 풍자 플래카드 퍼포먼스
9.6	선전 활동	서울역	추석맞이 귀향 선전활동
9.18	토론회	국회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와 해결을 위한 토론회”
9.25	촛불	청계천 입구	줬다뺐는 기초연금 촛불
10.2	기자회견	종묘공원	노인의날 기념 기자회견 “노인 절반이 빈곤, 이대로 방치할건가”
10.16	논평		세계 빈곤퇴치의 날 기념 “빈곤 노인 올리는 ‘기초연금 줬다뺐기’ 중단하라”
10.30	촛불	청계천 입구	줬다뺐는 기초연금 촛불
11.17	성명		국회 상임위 심의 맛이 “국회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1.19	기자회견	국회	“국회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11.27	촛불	청계천 입구	줬다뺐는 기초연금 촛불
12.18	촛불	청계천 입구	줬다뺐는 기초연금 촛불
12.30	신문광고	한겨레신문	8차 신문 광고 “해를 넘기는 줬다뺐는 기초연금, 2015년엔 반드시 해결”

## <표 2> 2015년 기초연금연대 활동 일지

날짜	활동	장소	내용
3.10	논평		기초연금 근본 사각지대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 탈락 수급자 자동전환 넘어 기초법 시행령 개정해야
4.23	기자회견	새누리당사	새누리당은 ‘줬다 뺐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5.1/2	수련회		수련회
5.8	퍼포먼스	광화문	불효의 날 퍼포먼스 (어버이날 기념)
7.1	2차 도끼상소	청와대 앞	“줬다 뺐는 기초연금” 2차 도끼 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7.23	토론회	국회	7/23 기초연금 1년 평가 토론회
10.2	퍼포먼스	청와대 앞	사도노인[思悼老人], 노인이 뒤주에 들어간 까닭은? (노인의날)
11.9	논평		‘줬다뺐는 기초연금’ 법안 상정, 꼭 통과시켜야
11.27	논평		‘줬다뺐는 기초연금’ 고집하는 복지부 규탄한다

### <표 3> 2016년 기초연금연대 활동 일지

날짜	활동	장소	내용
2.23	공문		4개 정당에 총선 공약 포함 제안
3.15	기자회견	국회 앞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3.31	논평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 비교
4.7	기자회견	새누리당사 앞	새누리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약속하라!
4.15	논평		야 3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공동 입법하라
5.7	논평		어버이날 선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5.30	논평		40만 기초수급 노인이 20대 국회 개원을 기다린 이유
6.20	간담회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

##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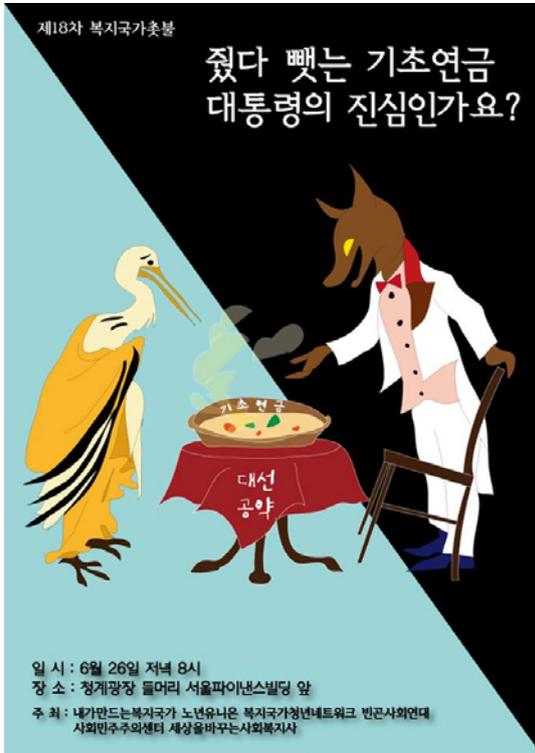
<2014/5/27 1인 시위 시작>



<5/27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운동 선포식>



<6/26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촛불집회>



<7/1 도끼 상소>



<7/9 사회복지사 성명 발표>



혹과 위생성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어렸을 적부터 있던 성 절도 사건의 범인 잡고 신고하는 등 오랜 시간이 흘러 복지사 등 관련 자들의 기교도 흔해지고, 물적 증거도 흔해져 잡을 수 없는 사건을 고소하고 고소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안면 인식을 통한 사생활이 위법하고 괴롭힘이 초래해 '민적 안전성'이 흔들리고 사회불안이 야기할 수 있다. 수사비 등 과외비를 남비도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제정안, 민선시 필요한 '특정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인신과 경미한 형량'을 달라고 하는 등 필요한 헌법과 사회적 위헌론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내란 및 외환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어떤이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상의에 될 때까지 중단시키는 것을 검토할 것은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한 달 전으로 더 나아가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로 '민적 안전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위헌론 받아야 한다.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위헌론 받아야 한다.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위헌론 받아야 한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배제”에 대한 사회복지사 1차 성명**

## 줬다뺏는 기초연금, 박 대통령의 진심인가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생계급여 20만 원은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횡령범죄 기초연금 정액에 대하여 우리 사회복지사는 박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질의**

-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의 진심인가요?
- 대통령님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 2014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했을 때와 “적당 9월 70% 노인에게 드린다” 했을 때, 차이를 보면, 대통령이 정말 진심이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공개토론의 제안**

-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합니다.
- 토론의 시기는 기초연금 최종 지급연차 1월 1일 이전입니다.
- 장소는 100만 이상의 시민 참여와 방송중계가 가능한 공개장소인 여의도 돌출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주장**

1.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응당하러!
2. 보건복지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공개토론회에 적극 대답하라!
3. 정부는 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도록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라!

2014년 7월 9일  
빈곤노인 기초연금을 지키는 388명의 사회복지사

빈곤노인 기초연금 배제에 대한 1차 성명 발표를 위해 여의도 돌출부에 모여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시민들. 배너에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의 진심인가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배너 아래에는 '2014. 07. 09. 빈곤노인 기초연금 지급은 388명의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다.

<7/9 빈곤 노인 국회 샤우팅>



<7/31 D-21 1인시위>



<8/1 거리서명 선포식>



<8/5 오토바위 시위>



<8/20 8월 생계급여 삭감 항의 퍼포먼스>



<8/20 부산일보 광고>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이 필요합니다!

7월 25일, 소득 70% 이하 447만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최초로 지급되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이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 40만명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p><b>기초연금</b> 가장 가난한 어르신 40만명에게는 왜 줬다뺏어야만 하나?</p>	<p><b>‘줬다 뺏는 기초연금’ 무엇이 잘못된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가난한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되는 기초연금 정책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li> <li>일반노인이 20만원 받는 반면에 빈곤노인이 안 받도 못 받는 것은 노인세대 간의 형평성과 우리 국민의 사회정의 공동체 정신에 맞지 않는다.</li> <li>빈곤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최소 약자를 우선하는 선별주의 복지원칙에도 맞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편주의 복지원칙에도 맞지 않는 철학 불명의 복지정책이다.</li> <li>빈곤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든 노인' 과 '70% 노인' 을 약속한 국가가 노인세대를 두번 속이는 일이다.</li> </ol>	<p><b>사회복지계의 주장</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 노인 삶의 현장을 외면하는 탁상행정.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반대한다!</li> <li>정부는 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이 소득 외로 인정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li> <li>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대통령은 응답하라!</li> </ol>
--	---	--

**빈곤 노인 기초연금을 지키는 121명의 사회복지사**

강동원 강성원 강성주 강영진 강영진 고영환 고만용 고만철 박경민 구지호 권경동 권대교 권도형 권혜미 김수연 김기범 김명선 김미선 김보수 김상덕 김아영 김연경 김은숙 김우영 김태만 김태형 김현미 김희영 노수연 노희연 류승일 류우진 박금란 박미옥 박상필 박성주 박서진 박시우 박영진 박은주 박은규 박용택 박연호 박혜선 배경수 배익순 부산시아동복지협회 시재용 선봉관 성우원차영림동 채명서 손이연 신동희 오경 오동필 오성길 오아영 오우성 오정민 오정성 오현우 황수정 우정아 유승 용영민 유영호 윤환관 윤혜복 이근의 이대훈 이영택 이영진 이상석 이상희 이상승 이상현 이상훈 이현옥 이현희 이혜수 이모 이모실 임미경 임성희 임정현 임재현 임재환 전재욱 정선혜 정수용 정용길 정우진 정원진 정일식 채수진 조성현 조성혜 조수경 조숙일 지경주 진희지 차태형 차경재인간문제연구소 최동섭 최미나 최민석 최혜선 추승림 한승훈 행복한국부담 이사님 홍은주 홍재봉 황순민 황준화 황태민

<9/3 새누리당 현수막 맞짱 퍼포먼스>



이 사진이 신문에 올라가고 <효도정당이란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였다>

<9/6 추석맞이 서울역 선전활동>



<9/18 국회토론회>

##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와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연금 받으세요

사 회 발 제 토 론	<p>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홍길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욱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일 시 장 소 주 최	<p>2014. 9. 18(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이목희 의원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p>

<10/16 연대활동: 한국헬프에이지 퍼포먼스>



<10/18 매주 토요일 거리 서명 활동>



<10/30 복지국가 10월 촛불>







<2015/5/8 어버이날 기념 퍼포먼스>



<2015/7/1 2차 도끼상소>





<2015/7/23 기초연금 1주년 국회토론회>

# 기초연금 1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2015.7.23(목)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사회**  
박윤영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오건호 내기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김성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신옥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

■ **공동주최** ■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김춘진의원, 박원석의원,  
양승조의원, 이목희의원, 최동익의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2015/10/2 노인의날 기념 퍼포먼스>



<2016/3/15 총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



<2016/4/8 새누리당 공약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16/06/29 윤소하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끝>